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31호 2021. 11. 11.(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2호)

공 고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315호)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316호)
-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31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2호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제7조)

나.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제8조) 삭제

다.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별표 1) 삭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33명 ⇨ 759명 / 증 26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 증 2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증 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33	353	11	113	41	215	
개정안	759	369	14	108	41	227	
증 감	+26	+16	+3	-5	-	+12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692	1	2	3	32	165	198	171	117	3
개정안	717	1	2	3	33	172	206	178	119	3
증 감	+25	-	-	-	+1	+7	+8	+7	+2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지도직(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1	-	8	3	30
개정안	42	-	8	3	31
증 감	+1	-	-	-	+1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kmmkt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 054-650-60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3명”을 “7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2명”을 “7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1명”을 “1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759	369	14	108	41	26	201
정무직 계	1	1	—	—	—	—	—
군수	1	1	—	—	—	—	—
일반직 계	716	360	14	78	37	26	201
4급	2	1	—	1	—	—	—
4급 내지 5급	3	3	—	—	—	—	—
5급, 5급 내지 연구관 또는 지도관	33	13	3	2	3	1	11
6급 이하	675	341	11	74	34	25	19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
별정직 계	—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
연구직 계	8	5	—	—	3	—	—
연구사	8	5	—	—	3	—	—
지도직 계	34	3	—	30	1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1	3	—	27	1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33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759명</u>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722명</u>	1. ----- <u>74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1명</u>	2. ----- <u>14명</u>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 ※ 정원조정 내역 : 733명 ⇨ 759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692	1	2	3	32	165	198	171	117	3
개정안	717	1	2	3	33	172	206	178	119	3
증 감	+25	-	-	-	+1	+7	+8	+7	+2	-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1	-	8	3	30
개정안	42	-	8	3	31
증 감	+1	-	-	-	1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7,062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 입 (백만원)	-	-	-	-	-	-
세 출 (백만원)	1,361	1,386	1,412	1,438	1,465	7,062
총비용 (백만원)	1,361	1,386	1,412	1,438	1,465	7,062

※ 최근 5년간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1.9%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1,361	1,386	1,412	1,438	1,465	7,062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361	1,386	1,412	1,438	1,465	7,062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행정지원실 지방농업사무관 안상훈(054-650-608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1,361,976천 원/연간

구 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연간 총인건비 (천원)	비고
합 계		1,361,976	
5급 +1명	7,243천원 × 12월 × 1명 (5급 기본급 평균 5,837천원 / 각종수당 1,406천원)	+86,916	
6급 +7명	5,933천원 × 12월 × 7명 (6급 기본급 평균 3,980천원 / 각종수당 1,953천원)	+498,372	
7급 +8명	4,251천원 × 12월 × 8명 (7급 기본급 평균 2,808천원 / 각종수당 1,443천원)	+408,096	
8급 +7명	3,055천원 × 12월 × 7명 (8급 기본급 평균 2,052천원 / 각종수당 1,003천원)	+256,620	
9급 +2명	2,511천원 × 12월 × 2명 (9급 기본급 평균 1,769천원 / 각종수당 742천원)	+60,264	
지도사 +1명	4,309천원 × 12월 × 1명 (지도사 기본급 평균 3,003천원 / 각종수당 1,306천원)	+51,708	

※ 2021년 9월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산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과를 건설교통과와 농촌활력과로 분리(안 제3조)

나. 주민복지실과 건축과 간 업무분장 조정(안 제3조)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kmmkt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 054-650-60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중 “의료보호”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나목, 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라목을 삭제한다.

13. 농촌활력과장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농촌활력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u>건설교통과</u> ,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 ----- <u>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u> ----- -----.
② 실·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복지실장	2.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의료보호</u> 에 관한 사항	바. <u>기초생활보장 수급자</u> ----- -----
사. ~ 차. (생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건설교통과장	1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도계관리에 관한 사항</u>	<삭 제>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u>농업용수 및 경지정리에</u>	<삭 제>

<u>관한 사항</u> 마. (생 략) <u>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u> <u>사업에 관한 사항</u> 사.·아. (생 략) <u><신 설></u> <u>13. (생 략)</u> <u>14. 건축과장</u> 가. ~ 다. (생 략) <u>라.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u> 마. (생 략) <u>15. (생 략)</u>	마. (현행과 같음) <u><삭 제></u> 사.·아. (현행과 같음) <u>13. 농촌활력과장</u> <u>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u> <u>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u> <u>농산어촌개발에 관한 사항</u> <u>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u> <u>사업에 관한 사항</u> <u>라. 그 밖에 농촌활력 행정 업</u> <u>무에 관한 사항</u> <u>14. (현행 제13호와 같음)</u> <u>15. -----</u> 가. ~ 다. (현행과 같음) <u><삭 제></u> 마. (현행과 같음) <u>16. (현행 제15호와 같음)</u>
---	---

참 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

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 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시행(2020. 8. 5.)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에 맞는 실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명시, 청년 취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삭제 후 실행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6조)

-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시행계획(도지사) 수립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나.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27조제1항제9호)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예천군민
- 지원내용 :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면접준비(정장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및 시험준비(각종 시험 응시료)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dsds4562@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8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효율적인 청년정책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실행계획----- -----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 -- 효율적인 청년정책 실행계획 ----- ----- ----- -----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기본계획</u>의 수립에 관한 사 항 2.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2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u>9.</u> (생략) ②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 1. <u>실행계획</u>-----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재정지원)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청년 취업 지원 사업</u>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 취업 지원(안 제27조제1항제9호)

제2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9. 청년 취업 지원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면접 준비 지원 : 140천원 × 100명 = 14,000천원
 - 면접 정장 대여(40천원/1회, 연 3회), 이력서 사진 촬영(20천원, 연 1회)
- 시험 준비 지원 : 100천원 × 100명 = 10,000천원
 - 각종 시험 응시료(30천원/1회, 연 100천원 이내)

4. 작성자

- 새마을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박태환(054-650-6090)